



#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 보험대리점 계약에의 적용 여부

백영화 연구위원

- 대리점법이 올해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및 금융감독당국은 대리점법을 보험대리점 계약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 대리점법은 원래 제조업 분야의 대리점거래를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험대리점 계약은 거래의 성격상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용역을 공급받아서 이를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위탁판매하는 경우를 규율함.
  - 보험대리점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공급받아서 소비자에게 재판매·위탁판매하는 구조가 아님.
- 대리점법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인데, 현재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에는 오히려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문제되고 있음.
  - 금융감독당국도 보험업감독법규 개정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자 함.
- 대리점법상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 제외 조항을 두어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음.
  - 명시적인 적용 제외 조항 없이는 보험대리점이 관련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제기할 소지가 있음.
  -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생한 비용은 결국 보험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
  - 대리점법은 금융투자업 거래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취지로 보험대리점 계약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 개별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일부 중소형 및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함.
  - 보험대리점 계약 전체를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 1. 검토배경



- 대리점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올해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대리점법은 일부 업종에 대해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험업 관련 거래는 해당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도 대리점법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 또한 보험대리점 계약은 일반 대리점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음.<sup>1)</sup>
- 대리점법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동법을 보험대리점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제조업 분야에서의 본사 및 대리점 간의 거래 구조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간의 보험대리점 계약은 그 성격이 상이함.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보험대리점 계약은 그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1) 머니투데이(2016. 11. 9), “공정위, 보험약관 이어 판매까지 이중규제...대리점법 논란”.

## 2.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대리점법 적용 문제



### 가. 대리점법의 제정 경과

■ 대리점법은 원래 제조업 분야의 대리점거래에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려는 취지에서 그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이해됨.

- 2013년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로 인하여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과도한 판매목표량 설정, 제품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대리점법 제정 논의가 촉발되었음.
- 당시 공정위는 8개 업종(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유형, 계약내용 등을 조사하고 업체별로 50개 대리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9월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sup>2)</sup>
- 공정위는 실태조사 후 2014년 5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세부 유형 지정고시」(공정위 고시 제2014-6호)를 제정함.
- 서울시는 2015년 위 고시의 준수 여부 및 대리점업계 불공정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9개 업종(자동차, 자동차부품, 음료, 식자재, 위생용품, 교복, 이동통신, 아웃도어, 스크린골프) 33개 제조사(대리점 본사) 1,864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sup>3)</sup>
  - 당시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이후 공정위 고시가 아닌 별도의 법령으로 대리점거래를 규율하고자 대리점법이 제정됨.<sup>4)</sup>

### 나. 대리점법상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 대리점법상 대리점거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의미함(대리점법 제2조 제1호).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3. 9. 11), “본사-대리점 거래관계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3) 서울시 보도자료(2015. 12. 1), “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4) 2015년 12월 22일 대리점법 공포(시행일 2016년 12월 23일) 및 2016년 7월 26일 대리점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여기서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 정의됨(대리점법 제2조 제2호).
  - 또한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로 정의됨(대리점법 제2조 제3호).
- 대리점법은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선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점법 적용이 배제됨(대리점법 제3조 제1항).
-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도 대리점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됨(대리점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 대리점법은 이에 더하여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대리점법 제3조 제2항 제4호).
    - 그러나 현재 대리점법 시행령안은 위 조항에 근거한 적용 제외 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다.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대리점법 적용 문제

- 보험대리점 계약은 원래 대리점법의 주요 규제 대상인 제조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무형의 금융상품에 대한 것으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거래 성격 및 구조에 의할 때 대리점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공급업자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서 이를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임(대리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 그런데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뿐이며(「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공급’받아서 이를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구조가 아님.

- ‘재판매’란 상품 또는 용역 구매를 전제로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아님.
- ‘위탁판매’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것으로(「상법」 제101조), 보험대리점은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판매에도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보험대리점 계약은 대리점법이 정의하는 대리점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실제로 ‘상품·용역의 공급-재판매·위탁판매’ 구조를 전제로 한 대리점법상 많은 조항들은 보험대리점 계약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예를 들면,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시 납품방법,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하도록 한 조항(대리점법 제5조),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대리점법 제6조), 반품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대리점법 시행령안 제6조 제2항 제2호) 등임.
- 또한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공급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최근에는 오히려 법인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 및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문제되고 있음.
    -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감독법규 개정을 통하여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sup>5)</sup>
- 결국 보험대리점 계약은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라.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명시적 적용 배제 조항의 필요성

- 현재 대리점법 문언은 대리점거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공정위 또한 대리점법이 보험대리점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됨.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8. 27), “보험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

- 이에 대리점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보험대리점 계약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안과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대리점법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를 명시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대리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이와 동일한 취지로 보험대리점 거래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대리점법상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명시적 적용 배제 조항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혼란과 불안이 계속될 수 있고, 보험대리점이 대리점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제기할 소지가 있음.

- 예컨대,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및 시책은 기본적으로 보험모집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적용을 전제함.
  -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대리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안 제5조 제4호).
  - 보험대리점은 실적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의 차등지급·적용이 이러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보험대리점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sup>6)</sup>
  -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함(대리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안 제5조 제1호).
  - 보험대리점은 무실적을 이유로 한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가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함(대리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안 제7조 제1항 제4호).
  -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의 관리·감독이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특히 대리점법은 분쟁조정 제도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6) 금융위원회(2015. 8. 27)의 “보험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마련된 「보험회사-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제19조 제1항 제3호.

-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위반 혐의가 있어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였음(공정거래법 제48조의3 제1항 및 제48조의6 제1항).
  - 그런데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이기만 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대리점법 제13조 및 제19조 제1항).
- 보험대리점이 대리점법 조항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공정위가 판단하여 대리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들이 제기되는 것 자체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보험회사 입장에서 불필요한 분쟁 비용을 소비하는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결국 보험료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보험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3. 결론



- 보험대리점 계약은 원래 대리점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거래의 성격상 대리점법 적용이 적절하지도 않음.
- 최근에는 오히려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굳이 보험대리점 계약을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없음.
- 이에 대해 대형 보험대리점(GA)을 제외하고 중소형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중소형 및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여도 충분함.
  - 일부 중소형 및 개인보험대리점 보호를 위하여 보험대리점 계약 전체를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는 없음.

-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설사 보험대리점이 대리점법 조항을 악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대리점법 위반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존부 여부, 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어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법적 불안과 불명확성이 존재함.
  - 또한 보험대리점이 대리점법 조항을 악용하여 각종 분쟁을 제기하는 것 자체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
  
-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데, 보험대리점 계약을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특별히 보험대리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금융감독당국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근본적으로 상충될 수 있음.
  - 대리점법 또는 동법 시행령상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kiri](#)